

부속서 4-가
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

1. 다음의 기관 및 그 승계기관은 이 장의 목적상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는다.
 - 가. 대한민국에 대해서는, 대한민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, 관세청·대한상공회의소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위임한 그 밖의 기관
 - 나. 인도에 대해서는, 인도의 법과 규정에 따라, 인도수출검사위원회 또는 인도 정부가 위임한 그 밖의 기관
2. 위임받은 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함으로써 제3장(원산지규정) 및 이 장의 요건을 반복적으로 또는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수출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그러한 기관에 위임한 권한을 취소한다. 이 목적상 수출 당사국은 권한 위임의 취소를 결정함에 있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의 견해도 고려한다.
3. 수출 당사국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취소·교체 또는 추가 사실을 수입 당사국에 신속히 통지한다.